

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김정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3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
발 의 자 : 김정환, 최정순, 최기찬, 문장길,
김상진, 송정빈, 김제리, 김생환,
이광성, 김광수, 송명화, 김경영,
유 용, 김화숙, 장상기, 이영실,
문병훈, 권영희 의원 (18명)

1. 제안 이유

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의사상자 지원사업)에서는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의사상자 및 의사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」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 골자

의사자에 대한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내용을 신설함(안 제7조제2항 및 관련 별표).

3. 참고 사항

- 가. 관련 법령 :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공헌자 및 「국민기초생활」을 “공헌자 및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자, 「국민기초생활”로 한다.

별표 화장시설의 。 『국가보훈기본법』에 따른 희생·공헌자의 배우자란 다음에 。 『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의사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。 『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의사자	무료	무료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

별표 봉안당의 사용료의 。 『국가보훈기본법』에 따른 희생·공헌자 및 그 배우자 (1위당) - 신규사용(최초 15년 사용) - 재 사용(5년마다 기간연장시)란 다음에 。 『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의사자 (1위당) - 신규사용(최초 15년 사용) - 재 사용(5년마다 기간연장시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◦ 『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의사자 (1위당) - 신규사용(최초 15년 사용)	100,000	240,000
- 재 사 용(5년마다 기간연장시)	50,000	120,000

별표 봉안당의 관리비 (매5년마다)의 ◦ 『국가보훈기본법』에 따른 희생·공헌자 및 그 배우자 (1위당)란 다음에 ◦ 『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의사자 (1위당) - 신규사용(최초 15년 사용) - 재 사 용(5년마다 기간연장시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◦ 『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의사자 (1위당)	25,000	45,000
---	--------	--------

별표 자연장지의 ◦ 『국가보훈기본법』에 따른 희생·공헌자 및 그 배우자 (1위당)란 다음에 ◦ 『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의사자 (1위당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◦ 『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의사자 (1위당)	250,000	750,000
---	---------	---------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시장은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 및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며, 서울 특별시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·관리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⑦ (생 략)</p>	<p>제7조(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공헌자 및 「의사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 의사자, 「<u>국민기초생활 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(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)제4항 관련 별표에 따라 의사자의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가 감면되어 이에 따른 세입감소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≒ 10,700천원

-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10,700천원으로 연평균 2,140천원임
- 추계의 전제
 -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
 - 물가상승률 미반영
 - 서울시 의사자의 숫자는 연간 평균 의사자인 2명(2010년~2018년, 9년간 19명 인정)으로 전제하여 추계

※ 서울시 의사자 인정 현황(2018년 12월말 기준, 보건복지부 행복e음 통계)

(단위 : 명)

년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계
의사자	1	3	1	3	3	4	2	2	0	19

- 자연장지의 사용료 부과기준인 40년을 기준으로 봉안당 사용료와 관리비를 산출 하였으며 봉안시설 안치되는 첫해에 40년치 비용이 다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(실제로는 40년에 걸쳐 비용 발생)
- 1인당 최대 1,070천원(봉안시설 안치시)~최소 370천원(자연장 안장시)의 감면액이 발생하나 봉안시설 안치시를 가정하여 비용 산출

※ 조례개정안에 따른 감면내역(서울시민, 봉안당 40년 안치 기준)

구분	개정 전	개정 후	총 감면액 (40년 안치 기준)
화장시설 사용료	<일반시민 기준 1구당> 120천원(대인)	의사자 무료	120천원
봉안당 사용료	<일반시민 1위당> 최초 15년 200천원 +5년마다 연장시 100천원	<의사자 1위당> 최초 15년 100천원 +5년마다 연장시 50천원	350천원
봉안당 관리비	<일반시민 1위당> 매 5년마다 100천원	<의사자 1위당> 매 5년마다 25천원	600천원

○ 상세 비용추계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합계
세입	시립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(조례안 제7조 별표)	△2,140	△2,140	△2,140	△2,140	△2,140	△10,700
	소계(a)	△2,140	△2,140	△2,140	△2,140	△2,140	△10,700
세출		-	-	-	-	-	-
	소계(b)	-	-	-	-	-	-
□ 총 비용(b-a)		2,140	2,140	2,140	2,140	2,140	10,700

○ 의사자의 시립장사시설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(=10,700천원)

- 의사자의 시립장사시설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

$$= \sum_{i=1}^5 (\text{연간 의사자의 시립장사시설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 금액})_i$$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0년~2024년)

- 연간 의사자의 시립장사시설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

$$\begin{aligned}
 &= \text{연간 의사자 1인당 시립장사시설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액} \times \text{의사자 수} \\
 &= (\text{화장시설 사용료 120천원 감면} + \text{봉안당 사용료 350천원 감면} \\
 &\quad + \text{봉안당 관리비 600천원 감면}) \times 2\text{명} \\
 &= 1,070\text{천원 감면} \times 2\text{명} \\
 &= 2,140\text{천원}
 \end{aligned}$$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주무관 채소영

☎ 02-2180-7944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